

사회복지관 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



보건복지부

[소관부서] 00000

매뉴얼 개정 개요

- 매뉴얼의 형식을 단순화하여 재난유형별 예방·대비 활동 및 대응 활동으로 구분하여, 평상시 혹은 재난 위기 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
- 매뉴얼의 내용을 최대한 현실 상황에 부합하게 표현하여, 시설 구성원이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시설이용자를 보조해야 하는 시설종사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.
- 또한,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기준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

※ 본 매뉴얼과 함께 각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 내 비치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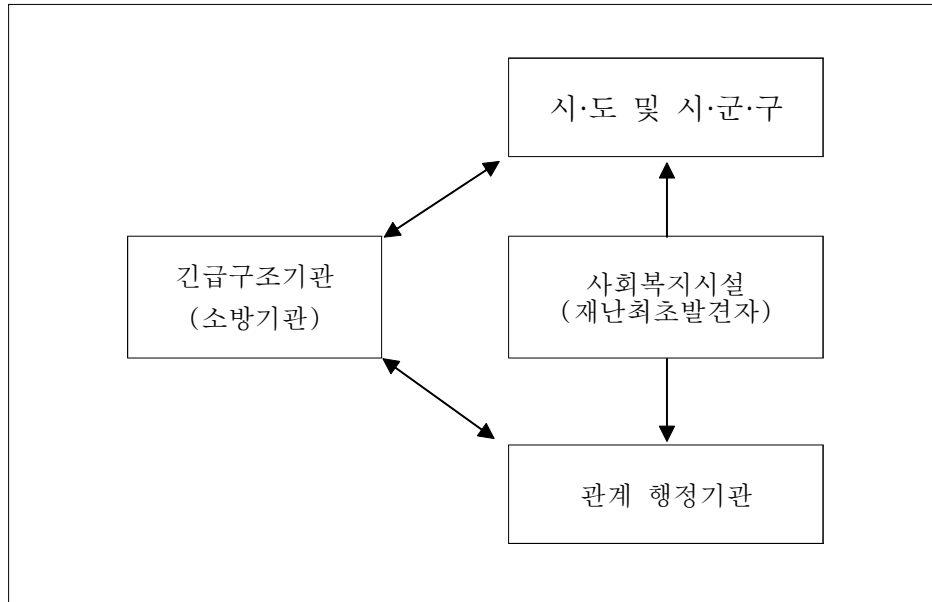
[목 차]

I. 재난 위기 대응체계	1
1. 재난 위기 시 연락체계	1
2. 재난 위기 시 대응체계	2
3. 재난 위기 시 대응조직	3
II. 안전관리 활동	4
1. 전기 안전관리	4
1) 예방 및 대비 활동	4
2) 대응 활동	5
3) 기타 활동	6
2. 가스 안전관리	7
1) 예방 및 대비 활동	7
2) 대응 활동	7
3) 기타 활동	8
III. 유형별 재난관리 활동	9
1. 사회재난	9
1) 화재	9
① 예방 및 대비 활동	9
② <대규모 시설> 대응 활동	11
③ <소규모 시설> 대응 활동	12
④ 대피 행동 요령	13
⑤ 대피 후 행동 요령	13
2) 건축물 붕괴 재난	14
① 예방 및 대비 활동	14
② 대응 활동	15

③ 대피 후 행동요령	16
2. 자연재난	17
1) 태풍·호우재난	17
① 예방 및 대비 활동	17
② 대피 행동 요령	18
③ 대피 후 행동 요령	18
2) 지진 재난	20
① 예방 및 대비 활동	20
② 대응 활동	21
③ 대피 행동 요령	22
④ 대피 후 행동 요령	22
부 록	24
1. 재난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	25
2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	26
3. 안전관리점검표	28
4. 안전관리 점검 시기 및 방법	33
5. 관련규정	3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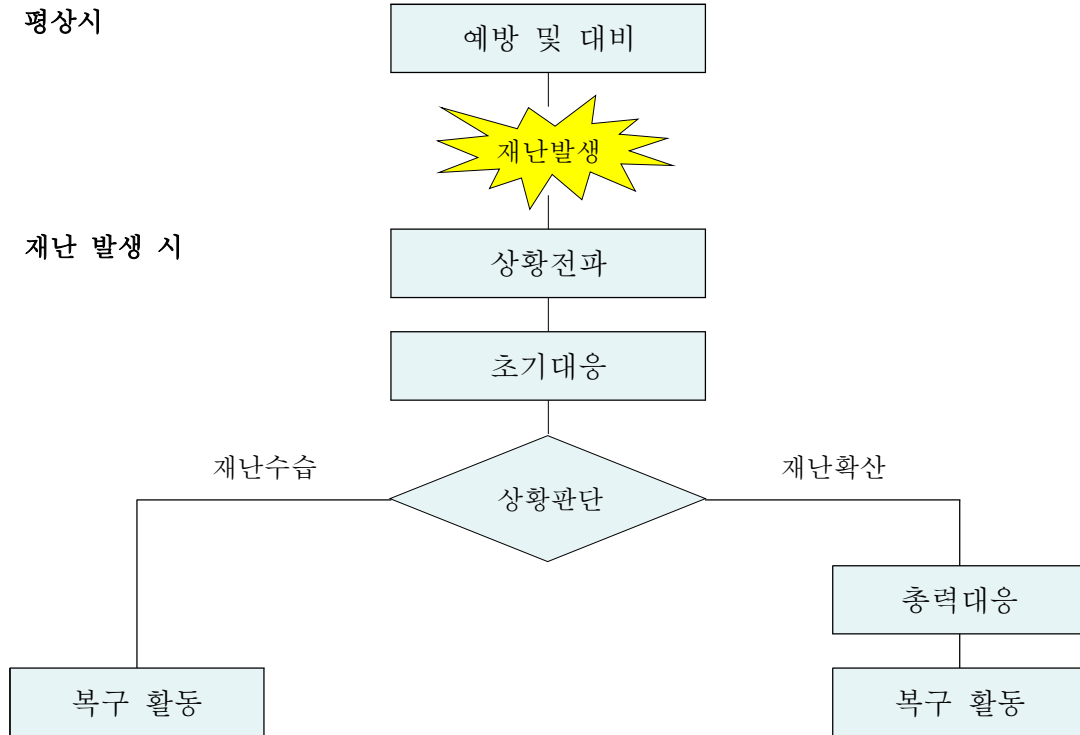
I. 재난 위기 대응체계

1. 재난 위기 시 연락체계



기 관	주요 임무
시·도 및 시·군·구	•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·감독 •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·수시 지도점검, 문제시설 조치 •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• 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비상 연락망 구축 • 사고 발생 시 시·도, 시·군·구 사고 수습본부 설치 운영(필요시) • 사고수습 후 사고 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※ 시·군·구는 담당 공무원을 관내 시설의 시설 안전담당자로 지정운영
사회복지시설	• 시설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• 시설 자체 안전 점검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 • 비상 대비 모의훈련 실시, 비상 연락망 구축 • 시설 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 복구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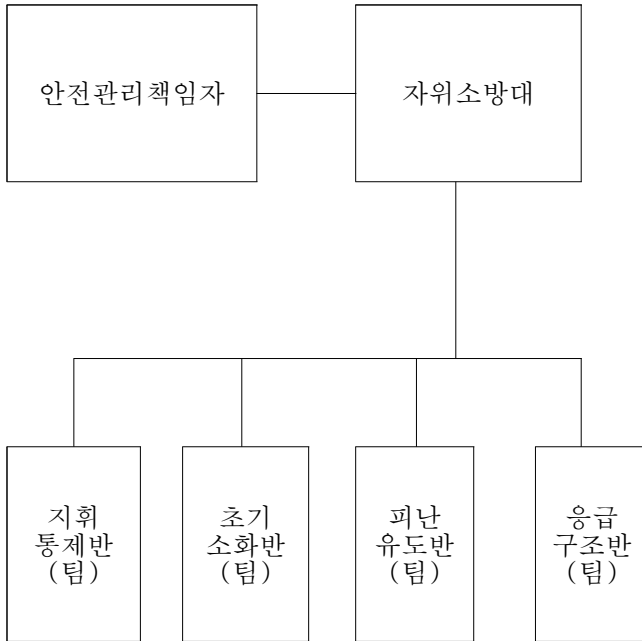
2. 재난 위기 시 대응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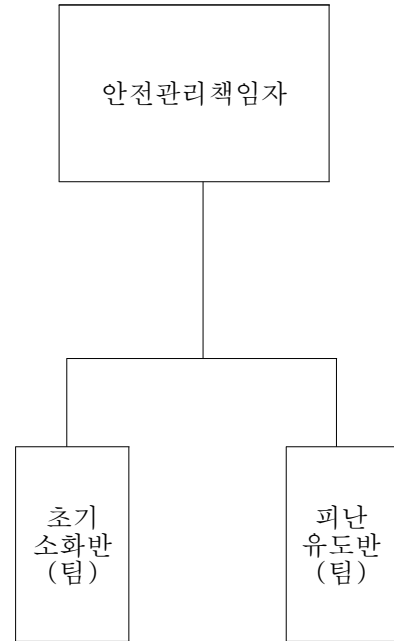
단계		담당	주요활동
평상시		- 안전관리책임자 - 시설종사자	✓ 예방 대비 안전관리 활동 - 각종 계획서 점검 - 안전 점검 - 교육 및 훈련 - 비상 연락망 최신화 - 각종 장비 비축 - 특이 상황감시 등
재난 위기 시	상황전파 (재난 임박 혹은 발생 시)	- 위기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시설종사자 - 위기 상황 신고접수를 받은 시설종사자	✓ 상황전파 활동 - 119, 112 및 유관기관 신고 - 비상 연락망 가동(자위소방대 출동) - 시설 내 안내방송 - 최초 현장 대응
	초기대응	- 자위소방대장 - 시설종사자	✓ 최초 현장 대응 인력 장비 보강후 초기대응 실시 ✓ 자위소방대장은 총력대응 여부판단 및 유관기관 협업 - 119, 112 및 유관기관 수시 확인 신고
	총력대응	- 자위소방대 - 지휘통제반(팀) - 초기소화반(팀) - 피난유도반(팀) - 응급구조반(팀) * 시설별 소방계획서에서 따라 조직 구성	✓ 유관기관 도착 시까지 총력대응 - 총력대응(인력 및 장비) 추가 보강 - 시설이용자 대피 -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병원 이송 ✓ 유관기관 도착 후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
복구 활동		- 안전관리책임자 - 시설종사자	✓ 응급 복구 및 피해지역 방역 실시 ✓ 피해 상황집계 ✓ 전기, 통신, 가스등 시설물복구

3. 재난 위기 시 대응조직

< 일반 사회복지관 시설의 경우 >



< 소규모 사회복지관 시설의 경우 >



(비고)

– 각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소방계획서를 참고로 하여, 시설 여건에 부합하여 조직구조 및 명칭을 구성함

II. 안전관리 활동

1. 전기 안전관리

1) 예방 및 대비 활동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.
- 전기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및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.
- 안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.
-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전기 안전관리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 - ▶ 전기설비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
 - 배선 쇼트(단락) 발생 예방 점검
 - 트래킹 예방 점검
 - 절연 노화 예방 점검
 - 단선 상태(반부분단선) 발열 예방 점검
 - ▶ 난방기구(전기난로)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
 - ▶ 가전용품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
 - ▶ 배전판·전선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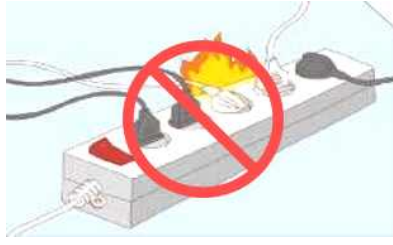
- 시설종사자는 전기사고 유형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.

전기사고 유형	정 의	예방 활동
누전 	전류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도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기가 새고 있거나 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계, 전기기구, 금속 기구 등으로 흘러가는 현상	- 누전차단기 설치 - 콘센트, 스위치 박스 등 누전 위험이 있는 곳 수시로 확인 - 전선 피복이 벗겨졌는지 수시로 확인 -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스위치를 끄
합선 	과전류로 인한 열의 발생으로 전선 피복이 녹아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 전선이 맞닿은 상태로 이때 스파크와 불꽃이 동시에 일어나 고열이 발생	-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를 사용 금지 - 노후화된 배선의 교체 - 과전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
감전 	전기가 누전되어서 흐를 때 사람이나 동물이 전기에 접촉되어 전류가 인체에 통하게 되어 전기를 느끼는 현상	-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 노출 금지 - 누전차단기 설치 - 전기기기 스위치 조작 금지 -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기기 접촉금지 - 안전기는 반드시 정격 퓨즈 사용 - 불량제품이나 고장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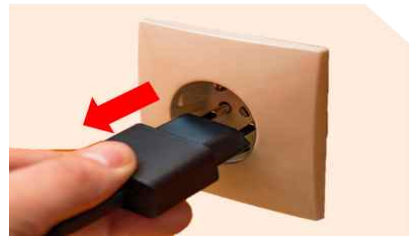
- 시설종사자는 다음의 전기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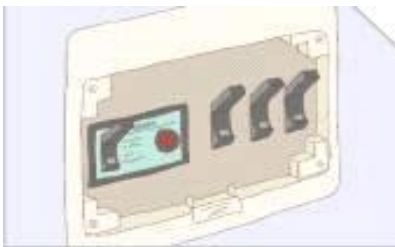
젖은 손 전기 접촉금지



문어발 접속금지



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, 뽑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뽑기



누전차단기 설치, 이상 유무 확인



습기가 많은 장소의 전기용품은 접지 후 사용



전기기구는 KC 인증 제품 등 규격 제품을 사용¹⁾

2) 대응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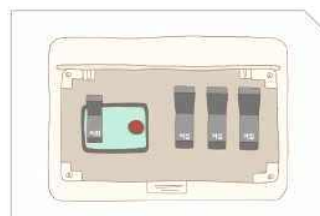
(1) 단순 정전의 경우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시설 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, 시설 내 정전의 원인을 파악한다.
-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하지 않고, 다시 내려가는 경우나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 전문가에게 의뢰한다.
- 시설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, 정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.
- 정전 복구 후 정전 원인이 파악되면,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
-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.
 - * 한국전력공사 24시간 고객센터 (국번 없이) 123
 - *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119/누전 신고 1588-7500



전류 안전 차단기



가정용 전류 차단기

1) (출처)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- 엘리베이터에 시설종사자나 시설이용자가 갇혀있는지 확인한다.
-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.

(2) 재난 위기 시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한 시설 침수가 예상되면 누전차단기의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.
- 지진, 건축물 붕괴 등의 시설물 재난 위기 시 전원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.
-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전기안전사고 발생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-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, 전기스토브, TV, 전자레인지, 컴퓨터 등의 플러그를 뽑는다.
- 랜턴을 준비하고 휴대폰을 통해 뉴스나 재해 상황을 파악한다.
-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피 시, 시설물의 전기를 차단한다.

3) 기타 활동

- 현관 및 벽면에 있는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 전류 차단기 상태를 확인한다.
-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해 다시 내려갈 경우는 옥내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.
-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를 모두 내리고, 메인 차단기인 누전차단기를 올려 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한다.
- 특정 분기개폐기를 올릴 때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다면, 특정 분기개폐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분기개폐기 회로만을 내려놓고 다른 개폐기는 모두 올려 점검한다.
-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는 옥내 전등 및 콘센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전문가 점검을 받는다.

2. 가스 안전관리

1) 예방 및 대비 활동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.
- 가스 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및 재난 시 대처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.
- 가스 안전시설 등을 정기·수시적으로 점검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가스연소기의 상태와 안전장치 및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한다.
- 정기적으로 검지기나 발포성 용액 등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.
- 가스 사용 시에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창문의 개방 및 연소기 작동 시에 환기팬이 연동되는지 확인한다.



정기적인 가스점검 실시
(검지기, 발포성 용액 이용)



보일러실 배기통 점검



가스 사용 시 충분한 환기 필요

2) 대응 활동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가스누출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며,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- * 한국가스공사 비상계획실 031-710-0453
 - * 한국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043-750-1240
- 응급조치 후 원인을 파악하고, 안전함이 확인된 후 가스 사용을 재개한다.
- 가스누출 복구 후, 가스누출의 원인이 파악되면,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(1) 다음과 같이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환기한다.

- 가스 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의 점화콧과 중간 밸브, 용기 밸브를 닫아 가스공급을 차단하고, 창문과 출입문을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다.
-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한다.

(2) 가스누출 부근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.

- 가스가 누출되어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 시 스파크에 의한 점화로 폭발 가능성이 크다.
- 가스누출 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

밸브를 닫아 가스 공급 차단



LPG는 빗자루로 쓸어내듯 환기



전기기구 사용 절대 금지

3) 기타 활동

(1) 가스누출실은 환기 후 사용

- 가스가 누출된 실내나 가스 저장소 등은 모든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었는지 확인 후 업무를 시작해야 안전하다.
- 누출 가스 중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바닥 부분의 환기를 철저히 한다.
- 무색·무취의 가스인 경우 일반적으로 환기 후 남아있는 가스 확인이 어려우므로 주의 깊게 점검한 후 사용한다.

(2) 장마철 침수지역 복구 활동

- 도시가스 및 LPG 시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.
- LPG 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.
- 가스레인지·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복구할 때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들을 깨끗한 물로 씻어 완전히 말린 후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한다.
- LPG 용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조절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LPG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, 조절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서 기능을 못 하여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절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.
- 물에 젖었던 가스보일러를 점검받지 않은 채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, 보일러 내부의 기기 판이 타버리는 것은 물론이며, 안전장치가 타서 가스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침수 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가스보일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,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,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, 보일러 자체가 그을려 수명을 단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조사의 A/S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.

III. 유형별 재난관리 활동

1. 사회재난

1) 화재

① 예방 및 대비 활동

구분	예방 및 대비 활동
일반화재	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 - 흡연 장소를 통제한다. - 인화성 물질(라이터, 성냥 등) 소지 제한 및 화기 장소(주방, 보일러실 등)의 출입을 통제한다. - 시설이 숲이나 산 인근에 소재한 경우, 시설 주변 산림의 수목 제거한다. - 유류 사용 시 누설 방지대책 및 안전시설(소화기)을 갖춘다.
	[시설종사자의 역할] - 주방 조리기구의 착화원 및 후드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. - 화기 시설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한다.
전기화재	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 - 전기안전 점검을 정기·수시적으로 실시한다. -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 사용 및 노후 배선을 교체한다. -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연물 방치를 금지한다. - 전열기 등의 자동온도조절장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.
	[시설종사자의 역할] - 퓨즈나 과전류차단기, 전선 등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한다. - 천장 속 및 전기기기는 청소를 통해 먼지나 가루를 제거한다. -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,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제거한다. -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.
가스화재	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 - 가스 안전 점검을 정기·수시적으로 실시한다. - 가스시설 주위의 위험성 및 가연성물질 방치를 금한다.
	[시설종사자의 역할] - 호스와 밸브 등은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설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 - 가스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 이탈을 금지한다. - 가스 사용 전 가스누설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한 후 사용한다. - 가스 사용 후 중간 또는 안전밸브를 닫는다. - 가스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간 밸브와 메인 밸브를 잠근다. - 가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.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이용시설 귀가조치

-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.
 - ✓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-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.
 -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,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
 -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,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- ※ 다만,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,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.
- ✓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
 -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.
 -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,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.
- ✓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.

② <대규모 시설> 대응 활동

구 분		대규모 시설에서의 시설종사자의 대응 활동
최초 화재 발견	경보 전파	(시설종사자) - 건물 내 화재경보 전파(육성, 비상벨, 자동경보 등) - 119 화재 신고 - 비상 연락망 가동(자위소방대 사전임무 지정) (시설대표 및 자위소방대장)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및 유관기관에 화재 상황 통보로 협조 요청
	초기 소화	(시설종사자) - 다른 시설종사자에게 도움 요청 - 필요시, 화재 대응이 가능한 시설이용자에게 도움 요청 - 투척용/수동식소화기, 소화설비 등 활용
	대피 활동	(시설종사자) - 재난안전취약계층(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)은 안전 구역으로 대피 - 청년층에게 어린이, 노약자 등에 대한 대피 유도 등 지원토록 도움 요청
화재 대응	자 위 소 방 대	지휘 연락반 - 화재 현장 확인 후 자위소방대 임무 지시 및 통제 -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전달 및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
		소화반 - 소화/진압 활동 실시(옥내소화전, 자동소화설비, 소화기 등) - 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 확산 방지 활동(방화문, 방화셔터 등) 
	대피반	- 시설이용자 스스로 안전 구역 대피토록 유도 - 구조대, 승강기 피난기, 미끄럼대, 완강기 등 활용가능한 피난 기구 활용 - 피난 기구(구조대, 승강식피난기 등) 설치 후 안전취약계층 대피 유도 -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시설이용자 중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대피 유도 - 피난 기구는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 가능한 피난 기구를 설치 후 운용 
		구조반 - 초기에 대피반 임무 지원 - 구조·구급 장비 준비 및 구호 조치 장소 확보 - 응급환자 구호 조치 및 환자 분류, 의료기관 도착 시 지원 활동
비 고		- 세부 내용은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재 대응하며,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여 추가하여 활용함 - 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 임무는 소방대장 지휘통제 받음

③ <소규모 시설> 대응 활동

구 분		소규모 시설에서의 시설종사자의 대응활동
최초 화재 발견	경보 전파	(시설종사자) - 건물 내 화재경보 전파(육성, 비상벨, 자동경보 등) - 119 화재 신고
		(시설종사자) • 경보전파 가능한 시설이용자를 선정하여 초기경보 가능토록 교육 및 임무 부여 • 근무자 수가 제한되므로 경보전파는 관할소방서(119)에 실시하고, 유관기관에 대한 경보전파는 소방서 경보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움받도록 함
	초기 소화	(시설종사자) - 다른 시설종사자에게 도움 요청 - 화재 대응이 가능한 시설이용자에게 도움 요청 - 투척용/수동식소화기, 소화설비 등 활용
	대피 활동	(시설종사자) • 재난안전취약계층(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)에 대하여 사전 안전구역으로 대피 • 피난층 등 대피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대피 유도
화재 대응	소화반	• 소방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화 활동 실시 (옥내소화전 사용) • 초기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실의 문을 폐쇄하고, 시설이용자를 우선으로 대피 •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 인계(화재 장소, 미 대피자 현황, 환자 발생 여부 등) • 주된 출입문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비상구 등 시설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이격시키고 소방대의 도움을 기다림 •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 통제를 받아 대피 및 구조활동 실시 (소방대 도착 후는 구급활동 위주 임무를 수행토록 함)  구급대 도착 후
비 고		• 세부 내용은 소방계획서에 따라 화재 대응하며,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함 • 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 임무는 소방대장 지휘통제 받음

④ 대피 행동 요령

가. 시설종사자 대피 시 행동 요령

- 사전에 지정한 대피로를 통해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화재 발생 시, 엘리베이터는 이동하지 않고,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안내한다.
- 화재 발생 시, 연기를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벽을 더듬으며 대피하도록 안내한다.
- 시설이용자가 불길을 통과 시에 젖은 수건,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시설이용자가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의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.

⑤ 대피 후 행동 요령

-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.
-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.
-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.
-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.
-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.
-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.

이용시설 귀가조치

가.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,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.
-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.

2) 건축물 붕괴 재난

- 건물의 하자 혹은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파손·훼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



① 예방 및 대비 활동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붕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.
-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붕괴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한다.
-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. (예: 시설 주변 건축물 굴착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등)
- 지자체, 소방,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.

이용시설 귀가조치

-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.
 - ✓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-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.
 -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,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
 -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,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- ※ 다만,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,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.
- ✓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
 -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.
 -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,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.
- ✓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아래의 [건축물 붕괴 징조]가 감지될 경우,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유관기관에 신고한다.
 -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때

-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때
-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가 노출된 때
- 바닥의 기둥 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때
-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때
- 기둥 주변에 거미줄 형 균열이나 바닥 슬래브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한 때
-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석축·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때
- 벽이나 바닥의 균열 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나는 때

② 대응 활동2)

가. 건축물 붕괴 발생이 임박할 경우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시설종사자에게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를 지시한다.
-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대피를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.
-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(1) 건축물 붕괴 발생 위기 시 시설이용자들을 사전 계획한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시킨다.
- (2) 시설이용자와 대피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대피한다.
 -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.
 - 대피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, 계단으로 대피한다.
 - 대피 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동 및 대피 과정에서 압사, 낙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.
 - 밖으로 나갈 때는 떨어지는 유리, 간판, 기와 등에 주의하며,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한다.

나.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경우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붕괴된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119등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며, 주변을 살펴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.
- 주변에 대피하지 못한 다른 시설종사자나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한다.
- 시설종사자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, 엘리베이터 홀, 계단실 등과 같이 건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장소로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이동시킨다.
- 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응급처치를 한다.
- 구조대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이 번갈아 가며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 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리도록 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.
- 대피하지 못한 시설이용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차분히

2)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

설명하고 구조될 수 있음을 확신시킨다.

-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,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할 때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한다.
-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반응하고,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.
- 휴대전화가 불통 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되, 배터리 절약을 위해 전원은 일정 주기로 on/off 해준다.
-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,ライター, 난로(스토브)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한다.

다. 붕괴된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

-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다.
- 폐쇄된 공간은 공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하여 호흡을 유지한다.
- 규칙적으로 벽·파이프 등을 두드린다.
-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만 켜서 배터리를 절약한다.
- 주변을 살펴 음식과 물을 확보하고,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체온 유지에 힘쓴다.
-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이나 기둥, 안전한 공간에서 기다린다.

③ 대피 후 행동요령

-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.
-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.
-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.
-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.
-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.
-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.

이용시설 귀가조치

가.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건축물 붕괴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,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.
-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.

2. 자연재난

1) 태풍 · 호우재난

- 태풍으로 강풍, 풍랑, 해일 등으로 시설의 파손 · 훼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
-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, 하천 범람, 산사태, 매몰 등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



① 예방 및 대비 활동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자체 풍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.
-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태풍 및 호우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한다.
-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. (예: 태풍 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등)
- 시설 내 건축물과 주변 배수구, 하수관거 등 배수시설의 점검을 실시한다.
- 침수 위험 지구를 파악하고, 침수 위기 시를 대비하여 모래주머니를 적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시설 내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파악하고, 안전조치를 취한다.
- 지자체, 소방,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.

이용시설 귀가조치

-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.
 - ✓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-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.
 -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,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
 -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,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- ※ 다만,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,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.
- ✓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

-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.
-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,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.
- ✓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지속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.
-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침수가 예상되는 저층 건물 내의 중요 물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식량, 식수, 생필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.
- 의료 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.
- 전기는 축전지나 자가 발전시설 등을 확인한다.
- 단수를 대비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하고, 가스는 비상용 가스용기를 준비하여 둔다.



배수구, 하수관거 등 배수시설 점검



식량, 식수, 생필품 등 비상키트 사전 준비

② 대피 행동 요령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, 위기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,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, 시설종사자에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를 지시한다.
-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.
-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.
-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한 후,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이용자들을 복도로 안내한다.
- 시설이용자들을 사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를 유도한다.
- 재난안전취약계층(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)의 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어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- 수도, 가스 밸브 및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한다.

③ 대피 후 행동 요령

-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.
-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.
-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.
-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.

이용시설 귀가조치

가.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안전하게 대피한 후,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.
-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.

2) 지진 재난

-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
-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파괴되고 시설이 붕괴되어 대량의 사상자나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



① 예방 및 대비 활동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.
- 시설종사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진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한다.
- 시설 및 주변 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. (예: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등)
- 지자체, 소방,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.
-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길 수 있도록 평상시 준비한다.

이용시설 귀가조치

- 재난 대피후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 귀가조치 계획을 수립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시 대피장소 및 연락처를 사전 공지한다.
 - ✓ 아래 사항을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-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시설이용자를 직접 인솔하여야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.
 - 보호자와 연락은 되었으나, 시설이용자에 대한 직접 인솔이 불가능한 경우
 - 보호자가 직접 인솔 가능할 때까지,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를 한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리인 혹은 시설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인솔하여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 -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이용자 단독으로 귀가조치 할 수 있다.
 - ※ 다만, 시설이용자에게 안전 귀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, 필요시 대중교통비 등을 집행한다.
 - ✓ 보호자 연락 두절일 경우
 -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자를 보호조치 한다.
 - 하루 이상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일 경우, 지자체 및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.
 - ✓ 시설이용자 안전 귀가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식량, 식수, 생필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.
- 의료 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.

- 전기는 축전지나 자가 발전시설 등을 확인한다.
- 단수를 대비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하고, 가스는 비상용 가스용기를 준비하여 둔다.



식량, 식수, 생필품 등 비상키트 사전 준비

② 대응 활동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지진이 멈춘 후 시설 및 시설종사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.
- 유관기관에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.
- 추가 지진에 대비한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지진이 발생하면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~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, 테이블이 없을 때는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한다.
- 지진 멈춘 후, 시설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하도록 유도하고, 테이블이 없을 경우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도록 한다.



크게 흔들리는 1~2분간 테이블 밑으로 대피, 방석으로 머리 보호

-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끄고,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,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.



화재 시 불을 끄고, 가스와 전기 차단, 출구 확보도 중요

- 불을 초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,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, 발화된 직후에 화재 규모가 작을 때이다.

	첫 번째 기회 크게 흔들리기 전, 즉 흔들림이 작을 때이다.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에 즉시 『지진이구나 불을 꺼라!』 라고 소리를 치고 사용 중인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끈다.
	두 번째 기회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이다. 크게 흔들릴 때는 요리 중인 그릇 등이 떨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므로 큰 흔들림이 멈춘 후 또 『불을 꺼라!』 라고 소리를 쳐서 불을 끈다.
	세 번째 기회 발화된 직후이다. 만일 불이 나도 1~2분 이내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.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 둔다.

③ 대피 행동 요령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지진이 완전히 멈춘 후 시설종사자에게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를 지시한다.
- 대피 안내방송을 통해 시설종사자와 시설이용자의 대피를 진행한다.
- 유관기관에 대피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.
-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을 위하여 자위소방대의 협조를 요청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이용자들을 복도로 안내한다.
- 시설이용자들을 사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를 유도한다.
- 대피장소로 이동 중 낙하물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, 시설이용자들이 가방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감싸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.
- 재난안전취약계층(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)의 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어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- 수도, 가스 밸브 및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한다.

④ 대피 후 행동 요령

-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대피 못 한 시설이용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.
-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.
- 응급처치나 의료 활동은 재난 현장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.
- 시설이용자가 대피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 들어가면 인명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.
- 화재나 건물 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.

-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시설 귀가조치를 실행한다.

이용시설 귀가조치

가. 시설이용자의 귀가 조치 시 행동요령

[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]

- 안전하게 대피한 후,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이를 보고한다.
-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결정한다.

[시설종사자의 역할]

- 시설종사자는 안전 귀가조치 계획서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시행한다.

부 록

1. 재난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
2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
3. 안전관리점검표
4. 안전관리 점검 시기 및 방법
5. 관련 규정

1. 재난 발생 보고대상 기관의 지원업무 및 보고내용

보고기관	지원업무 및 보고내용
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실 (과)	○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• 복구절차 협의 등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○ 지역 내 유관기관 공조 및 통합 지휘체계 확립 • 사상자 치료·장례, 이재민 구호, 긴급복구 등 • 구호 물품 지급 및 인명피해 지원 • 이재민 임시 주거 건축, 및 가동 • 사망자 유족 대책 수립·추진 및 부상자 치료 지원 ○ 사고 잔해물 처리 및 인력·장비 동원 명령, 인근 시·군·구 응원 요청 ○ 관련 기관 합동 화재 원인조사 참여 • 피해실태조사, 환경영향 예측 및 복구를 위한 합동조사반 ○ 폐기물 처리 지원 대책 추진 ○ 파손·방치 차량 견인 및 사고지역 불법 주·정차 단속 강화 ○ 교통 두절 지역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점검 및 복구 ○ 대형화재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○ 건축폐기물 처리 등 장비·예산 활용방안 수립·추진 ○ 사고수습 및 복구 장기화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
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과	○ 시설이용자 관련 행정적인 조치사항 지원 ○ 타 시설로의 이송과 관련된 자료 지원 ○ 기타 시설이용자 관련 자료 지원
소방서 (119)	○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○ 화재피해조사 및 원인조사 ○ 응급 복구 계획 및 원인조사 ○ 응급 복구 계획 수립·지원 ○ 부상환자 긴급 후송 ○ 복구 지원체계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
기타기관	○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○ 엘리베이터,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시설 관련 바우처 업체 등

2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

1) 안전관리계획서

①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성

-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복지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은 당황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.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.
- 재난 대응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교재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하고, 상세한 사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.

② 작성 시 고려사항

- 안전계획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위협이 되는 재난 유형을 분석·평가하여, 복지시설의 특성에 부합하여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. (예: 화재 위기대응 매뉴얼, 가스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)
- 안전계획에는 재난 발생 인지 방법, 전파 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다.
- 안전계획서는 시설이용자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과 훈련, 재난별 대응 방법, 피난 절차 등을 수록한다.
- 현장에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.

2) 안전관리계획서 포함할 항목

①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

- 복지시설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재난 유형에 대하여 예방·대비 활동에 관하여 기술한다.
- 재난 위기 상황 시 대응 활동에 대하여 작성한다.
(화재 위기대응 매뉴얼) 상황전파, 초기 진압, 대피, 사후 조치, 응급처치, 기타 등
(가스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) 상황인지, 우선 조치, 상황전파, 사후 조치, 응급처치, 기타 등
- 활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.
-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소방계획서

-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알리는 방법을 제시한다. (불이야 외치거나 발신기 경보를 누른다)
- 관련 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제시한다.
- 화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진화하도록 소화 시설 위치와 사용 방법을 포함한다.
- 화재경보나 초기소화에 실패한 후 행동하여야 할 요령을 표시한다.

③ 피난계획서

- 피난과 관련된 안내도나 안내방송 등을 포함하여 교육 훈련용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.
- 피난 목적과 피난 유도 조직을 구성하여 작성한다.
- 피난 유도자 임무와 피난 방송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다.
- 시설이용자 특성별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, 실내에 피난하지 못한 시설이용자 색출을 위한 행동 요령을 제시한다.
- 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-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문을 예시문으로 제시한다.

④ 피난안내문

- 시설에 있는 이용자의 특성을 분류하여 해당자가 쉽게 방송을 듣거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.
-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선택하여 안내문이나 대피방송을 위한 문구 등이 필요하다.

⑤ 피난안내도

- 시설의 층별 평면도를 그리고, 그 위에 피난 방향을 표시한다.
- 소화기, 옥내소화전, 경보장치, 발신기 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.
- 안내도 위치에서 피난 계단까지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.
- 막다른 통로나 복도의 위치를 표시하고, 유도등 위치를 표시한다.
- 피난안내도는 실 입구나 계단 근처에 부착한다.

3. 안전관리점검표

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점검표

시 · 군 · 구	시설 유형	시설명(운영법인)	시설담당자	연락처
운영 주체	☐ 지자체 및 공공기관 ☐ 민간(법인) ☐ 민간(개인)		시설장	
시설소재지			연락처	
점검 일자				
분 야 별 안 전 점 검				
분야	점 검 항 목	점 검 결 과		
(1)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	(1) 시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, 매년 수정·보완하고 있는가? (시설, 주변 환경, 이용자 특성 등)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	
		사 유	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
	(2) 안전관리책임관(시설장) 및 정·부 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	
		사 유	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
	(3)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? (생활시설 연 2회, 이용시설 연 1회 이상)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	
		사 유		
조치사항	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	
(4)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및 개별시설 안전관리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		
	사 유			
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	
(2) 책임보험 가입 여부	(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였는가?	결 과	☐ 가입 ☐ 미가입 ▪ 가입사 ☐ 사회복지공제회 ☐ 민간보험사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
	(2)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?	결 과	☐ 1억 5천만 원 미만 ☐ 1억 5천만 원 이상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
	(3)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?	결 과	☐ 2억 미만 ☐ 2억 이상 ☐ 3억 이상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
소 화 기	(1) 복도나 각 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	
		사 유	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
	(2)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 위치가 녹색이며 내부 분말은 굳어있지 않은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	
		사 유	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	
소화 설비	(3) 소방관련법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·간이스프링클러설비·단독경보형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	
		사 유		

(3) 소 방 안 전 관 리		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가?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4) 옥내소화전함 내에 호스와 관창의 상태가 양호하며, 개폐 밸브가 잘 열려 물이 방수되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5) 소화전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상 불편함이 없으며, 설비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6) 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자동 화재 탐지 설비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7)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8) 소방차 진입로와 소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피난 설비 등 적정 관리	(9)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으며, 전원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0)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소방서로 정상 연결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1) 복도나 실내에 피난계획에 따른 피난지도와 피난 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2) 피난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으며, 식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3) 비상조명등이 지정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,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4) 시설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피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5) 설치된 피난 기구는 견고하며 설치 위치 표시 및 사용 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6) 피난로가 확보되어 있으며,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으로 피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7) 방화문(방화셔터)가 설치되어 있으며,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8) 제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9) 배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
(3) 소방안전관리	내화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20)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21) 외단열(外斷熱)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(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)로 사용하였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출입 통제 구역 관리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22) 내부마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였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23)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해당 ☐ 해당 없음 ▪ (해당 시) 건축물 연면적 ☐ 1,000㎡ 미만 ☐ 1,000㎡ 이상
	(4) 전기안전관리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해당없음
		(24)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출입 통제 조치가 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) 배·분전반의 분진, 부식, 누수 여부 및 설치위치가(노출된 장소 설치 등) 적절한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(5) 가스안전관리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2) 누전차단기의 설치여부 및 차단기의 과열·손상은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3) 옥내·외배선의 전선용량, 공사방법 적정 여부 및 열화·손상은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(5) 가스안전관리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4) 규격에 맞는 전선과 콘센트를 사용하며, 노출된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5) 전기 정기안전 점검을 받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(5) 가스안전관리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1)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2) 가스시설에 손상이 없으며, 비눗물 등을 활용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(5) 가스안전관리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3) 가스 보일러(온수기)와 배기통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, 급기구와 환기구는 막힌 곳이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	(4) LPG 저장시설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, 보관상태가 적절한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(5) 가스안전관리		사 유	
	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
	(5) 도시가스·LPG 등 각종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·수시 점검을 받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6) '연소기'는 검사품 또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였는가 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(6) 재난 대응 대책	(1) 재난 발생 시 정보수집과 경보전파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2) 재난 대응 협력 기관(소방서, 지자체 등)과 비상 연락망이 준비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3) 화재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, 대피체계를 수립, 훈련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4)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, 대피체계를 수립, 훈련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5) 지진에 대비한 대응조치, 대피체계 및 훈련을 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6) 낙상 예방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 있고,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7) 재난으로 고립되었을 때 시설 생활자에 대한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8) 생활자시설의 경우, 대피 후 “시설 전원 조치 계획”이 수립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9) 이용자시설의 경우, 대피 후 “안전 귀가 조치 계획”이 수립되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(7) 시설물 안전 관리	(1) 건축물 지반침하, 구조체(벽, 지붕, 옥상 등)에 변형 및 누수의 흔적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2) 철근의 노출·부식, 콘크리트의 벗겨짐 또는 떨어짐, 창호 개폐 불량 등 건축물에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3) 지붕·옥상배수관·흡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, 배수구에 막힘 부분은 없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4) 시설 주변의 담장이나 옹벽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5) 시설물이 내진 설계 적용이 되었는가?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		사 유	
		조치사항	☐ 조치 완료 ☐ 추후 조치
	(6) 내진 설계 적용이 안 된 경우, 내진성능 확보	결 과	☐ 양호 ☐ 미흡 ☐ 해당 없음

4. 안전관리 점검 시기 및 방법

구 분		일 정	방 법
하·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		하절기(5월) 동절기(11월)	- 시설 담당 사회복지사 및 시설 관리인 실시 - 안전 점검 실시 후 구청 희망이음 보고
시설 자율 점검	건축	매월 초	- 시설 관리인 실시 - 관련 법령 및 자체 기준에 의한 점검 - 자율점검 실시 후 내부 보관
	소방		
	전기		
	가스		
비상구 점검		매일	- 소방안전관리자 및 시설 관리인 실시 - 자율점검 실시 후 내부 보관 - 월별 비상구 관련 교육 포함
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		5월(작동) 11월(종합)	- 법정 업체 대행 -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
전기안전관리		매월 1회	- 법정 업체 대행 - 저압 및 300KW이하 -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
전기설비 정기검사		3년마다	- 한국전기안전공사 시행 -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 (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확인 및 출력)
도시가스 정기검사		연 1회	- 법정 업체 대행 - 점검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
실내공기질 검사		연 1회	- 법정 업체 대행 - 검사 실시 후 결과 자료 내부 보관
승강기정기검사		연 1회	- 법정 업체 대행 -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내부 보관

5. 관련규정

1) 복지관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법 항목

① 보험 가입 여부 확인(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)

-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한다.
-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 운영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.

② 시설안전점검 실시(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)

- 시·군·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.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, 시설의 보완 및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시설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.

③ 소방시설 설치 의무(소방시설법 제9조)

-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해야 한다.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해야 한다.